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3(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03. 6. 20(금)
다. 상정일자 :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 6. 20)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중학생의 자격완화
· 대상자확대 · 장학금액 인상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학생 대상자 확대(안 제1조) - 대학생 포함.
- 장학생 자격완화 (안 제2조)
- 장학생의 정원 확대 (안 제6조)
- 장학생 지급방법 개선 (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재능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장학금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포함시켰고, 종전의 성적 평점 50% 이상인 것을 중·고생은 100분의 60, 대학생은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정원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도 대폭 인상 한 것임.
 - 이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 다만,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을 보면,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던 장학금을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학부모가 이장 신분임으로 수시로 읍·면에 등청하는 점을 감안 “군수가 지급” 하는 것보다는 “읍·면장” 통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중·고생과 대학생의 지급기준에 차이를 둔 이유는?	○ 실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완화했음.
○ 개정 후 예상되는 이장자녀수는?	○ 현재 40%정도 지급받는 비율이 60~65%정도 상승되리라 봄.

5. 토론요지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군수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수혜자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혜자가 이장들인 만큼 왕래가 자주있는 읍·면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6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이장이 수시로 읍·면에 등청하는 점을 감안하면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군수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읍·면장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7조제1항중 “군수가”를 “군수는 읍·면장을 통해”로 수정.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중 “군수가”를 “군수는 읍·면장을 통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7조(장학금의지급) ① -----교수가----- -----.	제7조(장학금의지급) ① -----교수는 <u>음·면장을 통해-----.</u>